## 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 류	사업자번호	2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지	-3	
	국세청 개팀	발팀	(무)곰두리토	!장			
보장성	999-81-99	)***	111466***	*	620101-1****	홍부인	363,600
	620101-1*****	김철수	620101-1****	김둘리			
	국세청 개팀	발팀	(무)곰두리토	!장			
보장성	999-81-99	)***	138782***	*	620101-1****	홍부인	690,000
	620101-1*****	김철수	620101-1****	김둘리	620101-1****	김영희	
	인별합계금액						1,053,6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 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9-81-99***	국****	일반	100,000
**9-81-99***	국****	안경구입비	225,562
**9-81-99***	국****	보청기 등	352,778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452,778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225,562
인별합계금액			678,34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교육비]

###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영희	950101-2*****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종류	학교명	사업자번호	지출금액 계
대학교	***대학교	**9-81-49***	1,100
인별합계금액			1,100

- 1. (아이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 2. 세액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위탁아동(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부담액
- 3. 공제대상금액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한도없음),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 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직업훈련비]

### ■ 수강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직업훈련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기관명	사업자번호	과정명	과정코드	지출금액 계
국세청 개발팀	999-81-99***	웹디자인	ACA200920000 18933-07	12,000
합계금액				12,000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직업훈련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2. 공제대상금액한도 : 한도 없음





# 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교복구입비]

###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교복구입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 호	지출금액 계
999-81-99***	국세청 개발팀	300,000
인별합계금액		300,000

1. 세액공제대상금액 및 공제대상금액한도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용만 해당되며 학생 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2013년도 사용액 계

일반	11,000
전통시장	1,000
대중교통	1,000

###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14-81-15***		경원산업관리 (주)	일반	11,300
999-81-99	)***	국세청 개발팀	전통시장	0
999-81-99	)***	국세청 개발팀	대중교통	5,000
	일반			1,600
상반기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일반			9,700
하반기	전통시장			0
	대중교통			5,000
연간인별합계				16,30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640101-2****

### ■ 2013년도 사용액 계

일반	0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14-81-09***		호진위더스 (주)	대중교통	1,200
214-81-10	)***	(주) 달마	일반	120,000
214-81-15	· )***	경원산업관리 (주)	전통시장	6,000
	일반			60,000
상반기	전통시장	3,000		
	대중교통			600
	일반			60,000
하반기	전통시장			3,000
	대중교통			600
연간인별합계				127,20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등]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2013년도 사용액 계

일반	952,000
전통시장	1,850,900
대중교통	0

###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999-81-99***		국세청 개발팀	일반	1,000
999-81-99	***	국세청 개발팀	전통시장	0
999-81-99	***	국세청 개발팀	대중교통	1,000
	일반			1,000
상반기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일반			0
하반기	전통시장			0
	대중교통			1,000
연간인별합계				2,000

- 1.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등]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640101-2****

#### ■ 2013년도 사용액 계

일반	54,000,000
전통시장	29,000,000
대중교통	21,500,000

####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23-30-12***		국세청 개발팀	일반	0
999-81-99	***	국세청 개발팀	전통시장	0
999-81-99	***	국세청 개발팀	대중교통	1,000
	일반			0
상반기	전통시장			0
	대중교통			1,000
	일반			0
하반기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연간인별합계				1,000

- 1.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2013년도 사용액 계

일반	100
전통시장	100
대중교통	0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현금영수증						
	종류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ㅎ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01,000	0	0	0	
현금영수증	일반	0	0	0	0	1,201,000
		0	0	0	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현금영수증 종류			월별 공제	대상금액		
	조근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5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전통	전통시장	0	0	0	0	0
		0	0	0	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	대상금액		
됩그어스즈	종류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δ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0	0	0	0	501,000
		0	501,000	0	0	
	일반					1,201,000
상반기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일반					0
하반기	전통시장					0
	대중교통					501,000
연간인별합계				1,702,00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640101-2****

#### ■ 2013년도 사용액 계

일반	0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현금영수증			월별 공제	대상금액		
	   종류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승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일반	0	0	0	0	1,201,000
		0	0	0	1,201,00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640101-2****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	대상금액			
됩기어스즈	종류	1월 2월 3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ㅎ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501,000	0	0	0	501,000	
		0	0	0	0		
	일반					0	
상반기	전통시장					0	
	대중교통					501,000	
	일반					1,201,000	
하반기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연간인별합	연간인별합계					1,702,00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내골승규	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사업자번호)	(상품명)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2011	대상액
국세청 개발팀 (999-81-99***)	무주택자의 중도금 대출 (임직원 부동	2014-01-01 2021-01-01	18년			100	100
(999-01-99^^^)	산 주택구입)	100	70	0	0	100	100

- 1.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부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2.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 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관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구분	2003년 이전 차입분	2011년 이전 차입분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상환기간 종류	10년~15년 미만	15~30년 미만	3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상환대출	기타대출
한도액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국세청 개발팀	999-81-99***	102730019040	2011-11-01	2,100
합 계				2,100

- 1.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2. 공제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대출원금	대출일자	연간합계액
국세청 개발팀 (999-81-99***)	10018602800020	10,000	2014-01-01	100
합계				100

1. 공제대상금액 : 거주자(임대인)가 일정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이 해당 차입금 이자를 금융회사등에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를 그 과세기간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 공제한도 :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보헤미안 (104-02-32***)	5009000000 002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06-10-15	1,100,000
합 계					1,100,000

- 1.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 단, '09.12.31일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 (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
- 2. 공제대상금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
- 3.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개인연금저축]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개인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계좌/증권번호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납입금액 계
국세청 개발팀	999-81-99***	L101000140J1	2000-12-31	2014-08-27	100
합계					100

- 1.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연금저축]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연도	당해연도 납입액 중	순납입금액	
계좌번호		납입금액	인출금액		
국세청 개발팀	999-81-99***	90,000	20,000	70,000	
777775		90,000	20,000	70,000	
순납입금	액 합계			70,000	

1.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3.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퇴직연금]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퇴직연금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연도	당해연도 납입액 중	순납입금액
계좌번호	연금구분	납입금액	인출금액	
국세청 개발팀	999-81-99***	90.000	20,000	70,000
777775	과학기술인공제회	90,000	20,000	70,000
순납입금액 합계				70,000

1.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납입액 (회사 부담금 제외)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3.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공제부금 납입현황

(단위:원)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대상기간	납입방법
20111220-0***	2014-12-20	월납
20111220 0^^^	2014-12-31	U U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01 월		0	07 월		0
02 월		0	08 월		0
03 월		0	09 월		0
04 월		0	10 월		0
05 월		0	11 월		0
06 월		0	12 월	2014-12-20	450,000
소득공제대상액		450,000	납입금액 계		450,000

1. 공제대상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사업소득자) 2. 공제대상금액 : 연간 불입액

3.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 체 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계
203-82-31506	한국자유총연맹(해피빈재단)	지정기부금	500,000
999-81-99999	국세청 개발팀(제출기관 별칭	법정기부금	600,000
인별합계금액			1,100,000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사업소득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단,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자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620101-1*****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펀드명	가입일자	연간납입액	소득공제대상금액
국세청 개발팀 (102-81-11***)	1264670004 8002	신한 BNPP To ps장기집합투자증	2014-01-01	100	400
국세청 개발팀 (102-81-11***)	1264670004 8003	신한 BNPP To ps장기집합투자증	2014-01-01	100	40

거주자인 근로자가 가입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ㆍ 가입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공제 배제 :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근로자



